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116
----------	-------

발의연월일 : 2023. 3. 27.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전홍배 의원,
양은숙 의원

1. 제안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나. 군수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다.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지정 규정(안 제6조~제7조)
- 마.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지원사업,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0조)
- 바. 골목형상점가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1조~제1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1조의2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으로서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6.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상업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연차별 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과 연계한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방향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주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골목형상점가의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골목형상점가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의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골목형상점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7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 및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또는 구역도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방안 시행
4. 상권컨설팅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보조금을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의 위촉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
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및 이와 유사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

중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 사회재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5장(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골목형상점가로서 지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골목형상점가로서 지원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2021.11.30 타법개정 2022.12.1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온누리상품권”이란 그 소지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육성,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